장성군의회 공고 제2019-7호

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「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9년 3월 20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 :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,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서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조, 제2조)

○ 장성군수, 사업자, 장성군민의 책무에 대해 정함 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

○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및 민감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, 제7조)

○ 미세먼지 관련 부서와의 협조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)

○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측정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9조)

○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)

5. 공고기간

○ 공고기간 : 2019. 3. 20. ~ 2019. 3. 24. (5일간)

○ 공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
6. 조례안 : 붙임

7. 의견 제출

○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4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,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○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○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
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- 전화 061)390-7504, 팩스 061)390-7595

장성군 조례 제 호

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,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서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미세먼지” 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
   가. 미세먼지(PM-10) :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(㎛) 이하인 먼지
   나. 초미세먼지(PM-2.5) : 지름이 2.5마이크로미터(㎛) 이하인 먼지
2. “대기측정망” 이란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
3. “취약계층” 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영 유아, 학생(유치원생을 포함한다), 장애인, 임산부, 환자 등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 등) 장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이라 한다)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장성군(이하 “군” 라 한다)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,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,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,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군민의 책무)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,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제6조(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) 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

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저감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
2.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
3.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·홍보 사업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「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) ① 군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취약계층(이하 “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(이하 “취약계층시설”이라 한다)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,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관계부서의 협조) 미세먼지 주관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,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대기측정망 설치·운영 등)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,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「장성군

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